비축시설 대여제도

□ 개 요

○ 국내 석유수급 차질 예상 시 정유사, 수입사, 석유다소비업자 등에 비축시설을 적기에 대여함으로써 국내 석유수급 및 물가 안정 도모

□ 비축시설 대여 요건

○ 지원 대상 : 정유사, 수입사, 석유다소비업자, 외국석유회사, 탱크터미널사업자, 석유유통사업의 공동수행자 등

○ 대여 사유 및 기간

구 분	대 여 사 유	기 간
비축시설대여	○시설 사용 장애로 인한 수급 차질 및 성수기 수급조절을 위해 필요 시 ○물류비 절감, 국제수지개선이 가능 시 ○공사의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사업,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 시 ○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원유, 석유제품의 국내 도입 필요 시 ○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 인정 시	2년 이내

○ 운용 근거 : 「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」

□ 추진실적

○ ‘82년 이후 ‘20년말까지 비축시설 66백만배럴 대여